

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 실험·실습실에서 실험·실습과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교내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에서 실험·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, 대학원, 부설 연구소 및 부속기관에 종사하는 교수, 직원, 학부생, 대학원생, 기타근무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실험·실습”이라 함은 교과과정에 의한 실험·실습 교과목의 교육활동을 말한다.
2. “실험·실습실”이라 함은 실험·실습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교수, 학부 및 대학원생이 실험·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.
3. “실험·실습기자재”라 함은 실험·실습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.

제4조 (관리조직 및 업무) ① 실험·실습실의 효율적인 운영, 관리를 위하여 총무처 관리계를 주관부서로 하며, 기자재를 설치, 운영하는 전공 또는 기관을 관리부서로 한다.

② 관리계는 기자재의 현황관리와 기자재관리, 불용품 처리, 재물조사 등 기자재의 제반관리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전공주임 또는 학부장은 소속된 실험·실습실 및 기자재의 운영,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④ 실험·실습실 관리부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정, 부 2인을 둔다. “정”은 해당 실험·실습실의 소속 전공주임교수가 되며, “부”는 담당(지도)교수 또는 실습·행정조교가 된다.

⑤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실험·실습실의 청결유지와 안전사고예방
2. 기자재의 점검 및 유지, 보수
3. 기자재 선정 및 확보 계획
4. 실험·실습실의 시설물, 장치,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, 유지관리
5. 실험폐기물 수집 및 폐기
6.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

제5조 (기자재) ① 전공 및 학부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 부품 및 유지, 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.

② 등재된 기자재가 분실, 파손되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실험·실습 기자재 분실, 파손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분실, 파손된 기자재는 현물 혹은 현금으로 변상한다.

제6조 (위해방지) ①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장비 및 기구비품 또는 물질을 취급하는 실습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표지(위험, 사용금지 등)가 있어야 한다.

- ② 위험물이나 유해물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서 처리하거나 사용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취급과 사용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는 처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.

제7조 (사고조사 및 보고) ①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, 주관부서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.

-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③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 (세칙) 이 규정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